2016년도 재단법인 성주군별고을장학회
출연 승인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제안이유

○ 2016년도 재단법인 성주군별고을장학회 출연에 대하여「지방재정법 제18조」가 개정됨에 따라 「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에 맞춰 사전에 의회의결을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2016년도 재단법인 성주군별고을장학회 출연금(계획) : 1,291백만원
- (재)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 조성 : 200백만원
- (재)성주군별고을장학회 기금 조성(군금고 협력사업비) : 55백만원
-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운영비 : 200백만원
 · 2016년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(26개교) : 836백만 원
- 성주영어체험센터 운영비 : 200백만 원
- 초등학교 방과후 특기적성 수업 : 100백만 원
- 중학교 방과후 수업 : 149백만 원
- 고등학교 방과후 수업 및 기숙사비 : 387백만 원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
「성주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
「성주군 별고을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」
「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」
〈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〉

나. 예산조치 : 2016년 인재육성기금 예산 편성(1,291백만 원)

다. 기타사항 : 해당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승인안은 지방제정법 제18조가 개정됨에 따라 매년 출연하고 있는 성주군별고을장학회 출연금과 일반예산 보조금으로 지원하던 초·중·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금을 인재육성기금 예산으로 편성하여 별고을장학회로 출연 지원코자 2016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

○ 주요 내용으로는

- 2016년도 재단법인 성주군별고을장학회 출연금은 총 12억 9,100만원이 되겠습니다.

- 세부사항으로는

· 성주군 별고을장학회 기금조성에 2억원, 군금고 협력금이 5,500만원

· 성주군 별고을 교육원 운영비에 2억원

· 26개 초·중·고등학교 교육경비 지원금이 8억 3,600만원으로

- 교육경비 세부사항으로는

· 성주영어체험센터 운영비 2억원

· 14개 초등학교 방과후 특기적성수업비 1억원

· 8개 중학교 방과후 수업비 1억4,900만원

· 4개 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비 및 기숙사비 3억 8,700만원이 되겠습니다

○ 따라서, 2016년도 재단법인 성주군별고을 장학회 출연 승인안은 지역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발굴·육성하고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으로 관계법에 따라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